

2023년 연말정산 안내문

- ☞ 서류 제출 기한 **2024년 2월 10일 (금)**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.
- ☞ 기한내 **서류미제출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로 직접 신고**하셔야 합니다.
- ☞ 국세청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)를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☞ 제출 서류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- ①세대주여부, 거주구분 필히 기재
 - ②공제받을 인적공제 대상자 필히 기재(**인적공제항목이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적어주세요!**)
*만20세이상 만60세이하의 대상자 : 연간 소득금액100만원이상은 공제불가함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(**중도입사자는 근로제공기간만 체크하여 파일제작 요망**)
 - ①전자문서PDF파일 (**생성된 파일명 변경하면 안됨**)을 메일발송 : PDF파일 제작은 하단참조
 - 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 추가서류
 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및 세대원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소득공제신고서에 필히 표기할 것)
 - 임대차계약서사본
 -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 추가서류
 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및 세대원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소득공제신고서에 필히 표기할 것)
 - 건물등기부등본
-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2023년도 신규입사자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- 2023년도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및 신규입사자
- 장애인증명서 - 근로자 또는 배우자,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
- 기타 공제서류는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**제출(기재내용 선명하게)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등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되니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.